

2005년도 일반 ·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(안)

의안 번호	제15호
의결 년월일	2006. 9. 15 (제130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8. 3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(예비비)의 규정에 의거 2005 일반 ·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임.

2. 승인근거

지방자치법 제120조(예비비) 제2항

3. 주요골자

가. 예비비지출 총괄

(단위 : 천원,%)

구 분	예산액	예비비	구성비	지출 건수	지 출 결정액	지출액	비 고
계	967,765,078	116,024,252	12.0	5	989,622	979,544	
일 반 회 계	573,957,920	5,425,892	0.9	4	973,662	963,593	
특 별 회 계	393,807,158	110,598,360	28.1	1	15,960	15,951	
공기업특별회계	175,950,960	1,015,960	0.6	1	15,960	15,951	
상 수 도 사 업	70,338,501	1,000,000	1.4	-	-	-	
하 수 도 사 업	105,612,459	15,960	0.02	1	15,960	15,951	
기 타 특 별 회 계	217,856,198	109,582,400	50.3	-	-	-	
주 택 사 업	45,150	22,150	49.0	-	-	-	
의 료 보 호 기 금	2,375,943	-	-	-	-	-	
영 세 민 생 활 안 정	1,268,000	58,000	4.6	-	-	-	
새 마 을 사 업	579,908	-	-	-	-	-	
장 기 미 집 행 대 지 보 상	1,000,000	-	-	-	-	-	
경 영 수 익 사 업	9,660,000	-	-	-	-	-	
도 시 개 발 사 업	28,502,247	21,784,769	76.4	-	-	-	
교 통 사 업	52,928,903	392,874	0.7	-	-	-	
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	121,496,047	87,324,607	71.9				

나.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: 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체서 : 붙임

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

일반회계

(단위 : 원)

사업명	지출 결정일	지출 결정액	지출액	잔액	지출사유	지출 부서
계		973,662,000	963,592,630	10,069,370		
1.호우 피해주택 복구지원	'05 8.25	31,200,000	21,600,000	9,600,000	호우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	원미구 건축과 , 오정구 건축과
2.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 공사	'05 8.25	16,500,000	16,030,630	469,370	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긴급 전기공사	사 회 복지과
3.지방자치단체 선 거관리경비납부	'05 10.17	265,962,000	265,962,000	0	제4회 지방동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 경비부담	자 치 행정과
4.저소득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	'05 10.17	660,000,000	660,000,000	0	보육사업의 지 침 변경으로 인한 보육료확대지원	오정구 복지과

특별회계

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원)

사업명	지출 결정일	지출 결정액	지출액	잔액	지출사유	지출부서
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취소 판결 확정 및 이의재결 보상금	'05. 10.05	15,960,000	15,951,350	8,650	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이의 재 결 보상금 지급	하수과

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원)

사업명	지출 결정일	지출 결정액	지출액	잔액	지출사유	지출부서
	해	당	없	음		

관계법령발췌서

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내 용

제 120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
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